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용어의 개정〉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2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고자료: 국방부 소관 법령 중 “심신장애” 표현이 있는 법령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1.
3. 회부연월일 : 2025.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들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임기)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심신장애(心身障礙)”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¹⁾하며,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함²⁾.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

의미함³⁾.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심신장애”이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언어 표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특히, 법령상 용어 선택이 사회적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군인사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함)상 ‘심신미약’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무 수행 불가능 사유를 사고 또는 회복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관련 기준의 명확성과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기본법」은 각각 장교 등,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및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해당 조항들은 장애인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직무가 본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전제로 하며, 군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또한,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형법」⁴⁾ 및 이하에서 소개하는 52개의 법률에서, “장애”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⁵⁾ 등에서도 사용하는 등 표현 자체가 특정 가치관이나 태도에 치우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법 개정에는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령상 용어의 정비는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령 전체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본 개정안은 「군인사법」 제17조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7조, 제48조⁶⁾에도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존재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⁷⁾에도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4)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항 문구만을 선택적으로 개정하는 본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 법령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제처 차원에서 법령 체계 전반적이고 통일적인 문구 정비 관련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부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

7) 참고자료 참조

개정을 위한 법률안」(총 52건의 법률 개정안) 역시 동일한 개정 내용으로, “심신장애”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국가 법 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해당 개정안들의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

※참고자료: 국방부 소관 법령 중 “심신장애” 표현이 있는 법령

「군인사법」 제17조(임기)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7조(전상·공상 등의 구분) ①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공상: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전상·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④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3 삭제 <2012. 5. 1.>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 등) 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삭제 <2016. 2. 4.>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표 생략)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위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사람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③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